

청 와 대 민 원

제목 : 진실을 밝혀주세요.

민원인 : 임그루

우편번호 36322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 다세대주택a동 103호

휴대폰 010-2878-2177

내 용

국민권익위원회에 2017년 2월 6일 접수(1BA-1702-004063)되어 법원행정처(대법원)(으)로 이송된 민원(2BA-1702-037858호)답변을 2월21일 받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아 다시 5번째 민원 합니다.

민원 요약

1. 사건 2001재누15 때 대법원장님 피고 추가신청 했습니다.

피고추가 된 줄 알고 피고가 3분이라 제출하는 답변서는 4부가 되는데 2004년 4월30일 변론에서 답변서 4부 냈습니다. 그런데 1부는 돌려받았습니다.

2006재누171 때 변론에서는 대법원장님 피고추가 시켜주세요 라고 주장했는데 바로 변론종결 했습니다.

※.참고(뒷면 첨부)

2004년 4월30일 제출한 답변서 7장.

☞. 이유 없이 묵살하는 것이 바른 사법행정 입니까? 2004년4월30일은 그 당시 높으신 분 문재인님이 재판장님 이었습니다. 법관 외에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며, 독립을 강조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재판을 하셨고 판결문에는 다른 분의 이름이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그동안 4번의 법원답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당해 법관 외에는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 주장합니다.

계속적으로 헌법 제103조에 반대되는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또 KT 노동조합사건은 법률을 만들거나, 정비되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관련 처음 국민권익위원회에 (1BA-1608-060985)접수되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 이송된 민원(2BA-1608-148112)주장 내용을 다시 주장합니다.

☞. 로스쿨출신 판사님들에게 재판 받게 해주세요.

☞. 행정법원에서 민사법원으로 이송시켜 노동법에서 보장된 조합원의 알 수 있는 권리를 묵살했으며,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이 법률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밝힐 수 없게 했습니다. 현실의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 맺음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하는 것은 많은 판사님들에게 권리를 무시당했기에 국민이 만든 권력에 도움도 받고 이러한 내용을 알아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 정부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그럽니다. 지켜보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대한 사건이라 생각되어 서울고등법원장님이 아니라 대통령님이 임명하신 대법원장님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소송하기 전에는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다. 라는 생각에 어려움 속에서도 법원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노력도 했습니다. 제가 소송하기 전에 생각했던 사회정의와 인권을 보호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법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뒷면 첨부)

- ①.서울고등법원장답변(접수번호2BA-1702-037858) 2장.
- ②.2004년 4월30일 제출한 답변서 7장.

2017년 2월 일 임그루

박근혜대통령 귀하